

정 관

전부개정 2015.1.1.

개정 2016.6.16.

개정 2016.12.30.

개정 2017.12.29.

개정 2018.12.28.

개정 2020.3.17.

개정 2020.11.5.

개정 2020.12.22.

개정 2021.7.9.

개정 2022.12.28.

개정 2023.2.24.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약

칭 KIHF)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각 호 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진흥원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8., 2020.3.17., 2020.11.5., 2023.2.24.>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상임이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한다.) 1인
 3.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1인
- ②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0.3.17.>

제6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30., 2020.3.17., 2023.2.24.>

-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3.17., 2023.2.24.>

③ 비상임이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재직기간 중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2020.3.17.>

④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3.17.>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0.3.17., 2023.2.24.>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그 외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3.17., 2023.2.24.>

② 제1항에 따른 연임은 임명권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8., 2020.3.17., 2020.11.5.>

③ 제2항에 따라 이사장 및 감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

④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

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5.>

1. 임원 후보자 추천

2. 이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이사장과의 계약 등) ①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이사장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계약안에 따라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과 협의를 거쳐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 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안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이사장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2.24.>

[본조신설 2020.11.5.]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예산·인사·조직에 있어서는 상임이사(양육비이행관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1.5., 2023.2.24.>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11.5.>

③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구)제10조①항에서 이동], 개정 2020.11.5.>

⑤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및 그 밖에 진흥원에 관한 사항

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신설 2020.3.17.>

⑥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0.3.17.>

제11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은 진흥원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20.11.5.]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0.11.5., 2021.7.9.>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제13조(임원의 신분 보장)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고의·태만·업무방해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

3.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4.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② 임원의 임기중 해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제48조,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12.29., 2020.11.5.>

③ 삭 제 <2017.12.29.>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상임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겸직 제한) 상임 임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제16조(임원의 의무) ① 진흥원 임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익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 임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진흥원 또는 고객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1.5.]

제17조(대리인의 임명) 이사장은 진흥원 직원 중에서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

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5.]

제3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 구성) ① 진흥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20.11.5.>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이사장이 진흥원 직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각급 부서장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30.>

제19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11.5., 2022.12.28.>

1.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중요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차입금 및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잉여금의 처리 및 손실금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직제·보수·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

10. 이사장 해임 요청에 관한 사항

11.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법령, 정관 및 주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13.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이사회 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로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상임이사와 당연직 이사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 날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8.>

⑥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⑦ 이사회 회의는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단,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1.7.9.>

제21조(제척과 회피) 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이사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이사 또는 이사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이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직 하였던 경우

②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2.12.28.]

[전문개정 2022.12.28.]

제22조(이사회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5.>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재산의 구분)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정부출연금 및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기증 받은 토지, 건물, 기타 물품
3.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제25조(재산의 관리)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담보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재산

② 진흥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양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진흥원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재원) 진흥원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및 출연재산
4. 사업 수익금
5. 용역 수입금
6. 기타 수입금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공공단체로부터의 기금 출연금
2.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물품·기타재원
3.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③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28조(사업 및 회계연도) ① 진흥원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4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민간 위탁사업의 경우 특별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29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6항에 의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매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출연금의 신청) 진흥원은 출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별로 그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결산서 제출) 매 회계연도마다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제32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및 공개) ① 진흥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의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가 되도록 한다. <신설

2020.12.22.>

③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④ 기부금품의 접수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본항신설,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본조신설 2016.6.16.]

제33조(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거나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4조(계속비)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예산의 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5장 조직 및 직원

제36조(조직) ① 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2제7항제4호 및

「정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양육비이행 관리원)을 운영한다. <개정 2021.7.9.>

② 그 밖의 진흥원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직원) ① 진흥원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0.11.5.>

② 직원의 인사, 보수, 복무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자문위원회)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 등에 관한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해산)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진흥원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22.>

제41조(규정의 제정 등) 이사장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6.16.>

1. 직제 중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기금에 관한 사항

제42조(저작권의 귀속) 진흥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진흥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저작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제43조(공고방법)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일간지에 이를 게재한다.

[본조신설 2020.3.17.]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16.>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0.3.17.>]

부 칙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관한 사항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종전 진흥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② 종전 진흥원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를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부 칙 <2016.6.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3.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행한다.

부 칙 <2023.2.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